

생산기반 구축사업

① 수출물류비 지원

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원한도를 정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물류비를 합산하여 수출업체에 지원
지원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중앙정부 : 등록일 기준 과거 1년간 단일부류 수출실적(FOB)이 25만\$ 이상인 업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단, 일본채소류ID 대상품목은 ID보유업체에 한하여 지원 (일본 채소류ID 대상품목 : 오이, 방울토마토, 파프리카, 고추, 깻잎) - aT 주관 품목별 수출협의회가 구성된 품목은 협의회 가입여부에 따라 차등 지원(협의회품목 : 파프리카, 딸기, 배, 사과, 단감, 버섯, 양란, 김치, 인삼, 전통주, 막걸리, 유자차) ○ 지자체 : 수출실적과 상관없이 지자체 관내에서 생산(제조)된 농식품을 수출한 업체
지원품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품목(과실류, 채소류, 화훼류, 김치류, 인삼류, 축산물, 전통주, 장류, 쌀가공품, 녹차 등)을 기본원칙으로 함 ○ 단, 지자체가 지역특성을 감안 필요시 자체지원 품목 별도운용 가능
지원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원한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표준물류비의 35%를 한도로 매월 수출물량기준에 따라 중앙정부(10%/수출업체)와 지자체(25%/수출업체+농가분) 분담하여 지원 ○ '14.1.1~12.31 수출물량에 대해 지원(B/L상의 수출선적일 기준) / 중앙정부 매월 및 지자체 사정에 따라 지원 ○ 지원액 = 수출물량 × 품목별 국가별 지원단가
추진절차	<div style="display: flex; align-items: center; justify-content: center; gap: 10px;"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text-align: center;">사전등록</div> ⇒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text-align: center;">신청서 접수 (매월 7일까지)</div> ⇒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text-align: center;">지원신청서 검토</div> ⇒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text-align: center;">지원금액 계산 및 지원</div> </div>
추진현황 및 계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연중지원
이용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수출지원시스템(atess.at.or.kr) 접속 ⇒ 업체 기본정보 입력 ⇒ 수출실적 입력 ⇒ 지원신청서(진산출력) 및 수출증빙자료 제출(지사)
담당부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aT 농산수출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담당자 : 문용현 차장(02-6300-1442), 홍장우 대리(02-6300-1443) ○ 농식품부 수출진흥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담당자 : 조경규 사무관(044-201-2176), 이상윤 주무관(044-201-2177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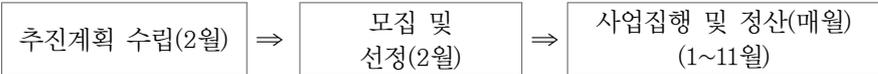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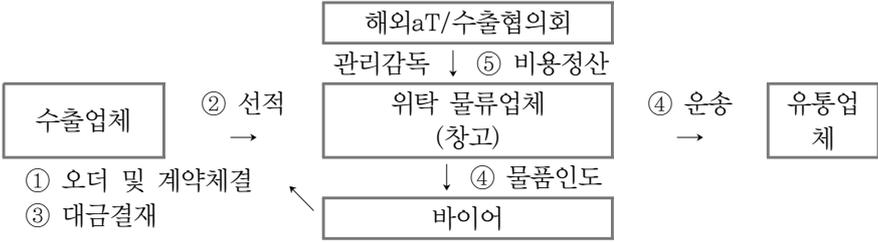
② 개별브랜드 지원

요	○ 수출 확대를 위해 해외시장을 리드할 글로벌 농식품 스타 브랜드 육성을 위해 개별 브랜드의 해외 홍보 마케팅 집중 지원으로 장기적 수출확대 발판 마련		
지원대상	○ 국내 수출업체(분야별 확인필요)		
지원품목	○ 농 축산물 및 가공식품		
지원내용	○ 지원분야 : 파워브랜드 / 신선브랜드		
	○ 지원내용(농식품 기준)		
	분	파워브랜드	신선브랜드
		2013년 기준 1백만불 이상의 수출실적이 있는 식품 브랜드	2013년 기준 수출실적이 있는 신선부류 브랜드 ※ 대기업 제외 신선 전략품목: 딸기, 장미, 사과, 버섯류, 토마토, 김치, 인삼, 파프리카, 단감, 배, 백합, 국화, 닭고기, 오리고기
	지원내용	목표국가 내 브랜드 파워 강화를 위한 홍보마케팅 및 브랜드 컨설팅	
사업비 지원한도	총 사업비의 50% 이내 (최대 180백만원) * 단, 대기업은 30% 이내	총 사업비의 50% 이내 (최대 180백만원)	
사업량	5개 브랜드	4개 브랜드	
신청방법	○ 선정방법 : 서류전형 → 계량평가 → 면접심사(선정위원회) - 평가대상 : 업체별 목표 국 대상 브랜드마케팅 사업 계획서 - 서류전형 : 사업평가전 신청자격 및 제출 서류의 적정성 검토 - 평가구성 : 계량 30점, 비계량 70점(면접심사) - 최종선정 : 분야별 최종 득점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되 분야별 사업량이 미달될 경우 수요가 많은 분야에서 추가선정 가능 * 시 선정위원회 구성(내 외부 전문가 6인 이상)을 통해 객관성 제고		
추진절차	<div style="display: flex; align-items: center; gap: 10px;"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text-align: center;">모집공고 (2월)</div> ⇒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text-align: center;">업체선정 (3월)</div> ⇒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text-align: center;">사업 약정체결, (3월)</div> ⇒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text-align: center;">사업추진 및 중간점검(연중)</div> ⇒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text-align: center;">정산 및 종합평가 (12월)</div> </div>		
추진현황 및 계획	○ 현 황 : 총 9개 업체 선정 예정 * 단, 분야별 미달 혹은 적정업체가 없을 경우 타분야 추가선정 가능 후 사업추진 중 ○ 계 획 : ' 14년 2월 신규업체 통합모집		
이용방법	○ 모집공고 확인(global.at.or.kr>알림마당>공지사항) ⇒ 신청서작성·제출(본사) ⇒ 신청업체 평가(서면, 업체PT 등) ⇒ 지원업체 선정 ⇒ 약정체결 ⇒ 사업추진		
담당부서	○ aT 수출전략처 식품수출팀 - 연민아 대리(02-6300-1375) ○ 농식품부 수출진흥팀 - 담당자 : 정장식 사무관(044-201-2174), 윤재돈 주무관(044-201-2175)		

③ 수출 해외전진기지 구축사업

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수입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중국시장 수출활성화를 위해 냉장 냉동 물류 인프라 구축 및 적극적인 마케팅 지원
필요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WTO협정 시 수출보조금(물류비 등) 폐지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 ○ 중국과의 FTA 체결 대응과 현지시장의 직접적 공략을 위한 수출인프라 구축 ○ 중국은 냉장·냉동 물류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으로 신규 시설 설치 필요
사업형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형태 : 물류기능과 마케팅·홍보 기능을 동시에 갖춘 시설 설치(칭다오) ○ 시설 : 냉동·냉장 물류시설 / 판매·전시홍보관 / 연구·조사센터 / 컨설팅, 상담센터 등 행정시설 ○ 운영 : 수출전진기지 관리운영 및 수출 종합지원 기능 수행
추진현황 및 계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추진현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수출전진기지 현지법인 설립 완료(11.10월) : 칭다오aT물류유한공사(青岛爱特物流有限公司) - 수출전진기지 부지 확보(12.5월) - CM(건설사업관리) 업체 선정완료(12.8) - 설계용역 업체 선정(12.10) 물류센터 위탁운영업체 선정(13.5월) - 물류센터 건설업체 선정(13.6월) ○ 향후계획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수출전진기지 물류센터 공사(13.12월~ 14.10월) - 수출전진기지 물류센터 운영(14.11월~)
담당부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aT 해외관리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담당자 : 이준호 과장(02-6300-1683) ○ 농식품부 수출진흥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담당자 : 정장식 사무관(044-201-2174)

④ 해외 물류기반 구축사업

<p>요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냉장 냉동 물류서비스를 지원하여 고품질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및 신규시장 개척 지원
<p>지원대상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수출업체 및 해외바이어
<p>지원내용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규모 : 국내외 75업체 내외(농산 60, 수산 15) ○ 운영지역 : 10개국 20지역(해외 aT 소재지역) ○ 지원내용 : 냉장·냉동창고 보관료(80%) ○ 지원방법 : 운영실적에 의한 실비정산(물류업체에서 매월 청구)
<p>추진절차</p>	
<p>이용방법</p>	
<p>추진현황 및 계획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현 황 : 9개국 17개지역 52업체 지원(' 13년) ○ 계 획 : 10개국 20개지역 75업체(' 14년)
<p>담당부서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aT 해외관리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담당자 : 유정립 차장(02-6300-1682) ○ 농식품부 수출진흥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담당자 : 정장식 사무관(044-201-2174)

⑤ 수출보험 지원사업

<p>요</p>	<p>○ , 단기수출보험 가입비 지원으로 수출업체의 안정적 경영 지원</p>												
<p>지원대상</p>	<p>○ 농식품 수출업체(수산물, 임산물, 연초류 제외) * ,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을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지원 제외</p>												
<p>지원내용</p>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30%;"></th> <th style="width: 35%;">환변동보험</th> <th style="width: 35%;">단기수출보험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</td> <td>일반형, 범위제한 선물환, 옵션형(부분보장/완전보장) 가입비</td> <td>선적후 및 농수산물패키지, 중소기업플러스 단체보험 가입비</td> </tr> <tr> <td>지원비율</td> <td>가입보험료의 90%</td> <td>가입보험료의 90% * , 단체보험은 100%</td> </tr> <tr> <td>지원한도</td> <td>10백만원 한도</td> <td>10백만원 한도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* 연도별 사업예산 및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상품특성에 따라 지원내용 변경가능</p>		환변동보험	단기수출보험		일반형, 범위제한 선물환, 옵션형(부분보장/완전보장) 가입비	선적후 및 농수산물패키지, 중소기업플러스 단체보험 가입비	지원비율	가입보험료의 90%	가입보험료의 90% * , 단체보험은 100%	지원한도	10백만원 한도	10백만원 한도
	환변동보험	단기수출보험											
	일반형, 범위제한 선물환, 옵션형(부분보장/완전보장) 가입비	선적후 및 농수산물패키지, 중소기업플러스 단체보험 가입비											
지원비율	가입보험료의 90%	가입보험료의 90% * , 단체보험은 100%											
지원한도	10백만원 한도	10백만원 한도											
<p>추진절차</p>	<p>○ 보험료 선급(매 분기) : 공사→무역보험공사(사업위탁체결)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display: flex; justify-content: space-around; align-items: center;"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text-align: center;"> 보험가입 (수출업체→보험공사)) </div> <div style="font-size: 2em;">⇒</div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text-align: center;"> 지원대상확인 (보험공사→aT) </div> <div style="font-size: 2em;">⇒</div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text-align: center;"> 보험가입 및 자부담분(10%) 납부 (수출업체→보험공사) </div> </div>												
<p>추진현황 및 계획</p>	<p>○ 현 황 : 공사-무역보험공사간 사업약정 체결완료 ○ 계 획 : 무역보험공사를 통한 연중지원</p>												
<p>이용방법</p>	<p>○ 수출업체는 보험가입과 동시에 공사로부터 자동으로 보험료 지원 (자부담은 업체 납부)</p>												
<p>담당부서</p>	<p>○ aT 농산수출팀 - 담당자 : 문용현 차장(02-6300-1442), 홍장우 대리(02-6300-1443) ○ 농식품부 수출진흥팀 - 담당자 : 조경규 사무관(044-201-2176), 이상윤 주무관(044-201-2177)</p>												

■ 환변동보험 종류

분		내 용	특 징
(Forward)		환율하락시 보험공사에서 환차손 (보험금) 지급하고, 환율상승시 업체에서 환차익(환수금) 납부 - 보험금 : 보장환율 > 결제환율 - 환수금 : 보장환율 < 결제환율	환율하락시 보장탁월 하나, 환율상승시 업체에서 부담
옵션형	범위제한선물환 (Collar)	일정구간에서는 보험금과 환수금 납부가 면제되는 상품 - 보험금 : 보장환율 -50원 > 결제환율 - 환수금 : 보장환율 +50원 < 결제환율	○ ±50원, ±100원, ±200원 구간에서 환차익, 환손실 인정 ○ 보험요율 : 1~3%로 수시변동
	부분보장 옵션형 (Put Spread Option)	환율하락시에는 보험공사에서 보험금을 지급(최대 달러당 20~80원 한도 범위 내)하고, 환율 상승시에는 환수금 면제되는 상품	환율하락시에는 일정부분만 보장(최대 달러당 20~80원 한도 범위내)받고, 환율상승시 업체부담 없음
	완전보장 옵션형 (Put Option)	환율하락시에는 보험공사에서 보험금을 지급(하락분 전액 지급)하고, 환율 상승시에는 환수금 면제되는 상품	환율하락시 하락분 전액 보장 받고, 환율상승시 업체부담 없음

* 모두 가입보험료의 90%로 동일하며, 지원한도는 일반선물환, 범위제한선물환, 부분보장형옵션을 합산하여 10백만원 한도임

* 보험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무역보험공사 영업점 문의 요망

■ 한국무역보험공사(<http://www.keic.or.kr/>) 영업점 연락처

영업점	연락처	영업점	연락처	영업점	연락처
서울지사	02-551-0481	부산지사	051-245-3981	대구경북지사	053-252-4932
인천지사	032-422-2713	광주전남지사	062-226-4820	대전충남지사	042-526-3291
울산지사	052-261-1833	경기지사	031-259-7600	경기북부지사	031-932-3501
강원지사	033-765-1060	충북지사	043-236-1301	전북지사	063-276-2361
경남지사	055-286-9397	제주사무소	064-751-6601	본사	02-399-6775

【 (농수산물패키지) 】



- 구 성 : 기본위험과 선택위험
- 계약기간 : 1년
- 가입대상 : 농수산물 수출자 또는 생산자
- 보상금액 : 책임금액 범위 내
- 가입방법 : 기본위험(대금미회수 위험) 가입 필수, 나머지 위험은 선택

■ 상품별 설명

분	기본계약	선 택 계 약	
	대금미회수위험	수입국 검역위험	클레임발생 위험
	1억원~3억원	1백만원~1천만원	1천만원~5천만원
보상요건	수입자 또는 수입국의 사정으로 수출대금이 회수되지 않는 경우	수입국 검역과정에서 소독, 폐기 명령	바이어의 클레임 제기
보상내용	계약기간 중 모든 수출거래	혼중 및 폐기 비용 보상	클레임 처리비용 (조사, 소송 등)
계 약 액	천만원 단위	백만원 단위	천만원 단위
보험요율 무신용장	신용장거래 0.3% 무신용장 2.0%	4%	0.7%
보상거절	물품에 하자 또는 법령 위반 수출시		본지사간 수출거래, 법령위반 및 수출대금 결제 만기일 경과후 발생한 클레임
보상시기	보험금 청구 후 1개월 이내		
보 상 액	보험계약 범위내에서 보상	소독 및 폐기 비용	품질조사비 및 중재, 소송비100%, 재수입 또는 전매시 운송비 및 현지 창고 보관비 50%

*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

【 일반 단기수출보험(선적후)와 농수산물 단기수출보험(선적후)의 차이점 】

분 목	농수산물 단기수출보험(선적후)		일반 단기수출보험(선적후)
	농 수 축· 임산물		제한 없음
우대내용	담보위험	수입국의 행정규제조치 또는 검역기준 변경에 따른 통관불능 위험 포함	-
	보험료율	결제방법 및 기간에 따라 단기수출보험의 35%~55% 수준	-